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 (4) 단체보험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보험편)(이하 “개정 상법”이라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의 마지막 내용으로 단체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상법	개정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체보험 특칙의 적용대상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이들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특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제735조의3 제1항).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보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약에 의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특칙의 내용

개정 전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제731조), 단체보험의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체보험의 운용상 편의를 주고, 단체보험의 경우 일부러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도덕적 해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위와 같은 특칙을 인정한 이유입니다. 다만 규약에 의하지 않은 단체보험의 경우 본 특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동의 요건 추가(개정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은 구성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체결되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이 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제735조의3 규정을 볼 때 단체보험을 반드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자인 사업자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되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단체보험이 타인의 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그런데 이와 같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735조의3 제1항의 특칙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동조의 입법목적이 단체보험에 운용상 편의를 부여하여 단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범죄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의 이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들의 개별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제735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를 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판례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로규칙 등 단체의 규약에서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명시한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불필요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백상미 변호사 | TEL. 02 316 4226 | E-Mail. smbak@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